

건축사공제조합의 출범에 즈음하여!

At the Launching Moment of Architect's Mutual Benefit Association

미국 제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취임 연설에서 “국민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와의 관계를 놓고 그대로 대입시켜 보아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은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건축재산의 보호, 국제경쟁력 확보와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여 건축사의 업무 수행 중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보증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제사업의 추진 경위는 익히 알듯이 1995년 1월 건축사공제사업의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IMF 등 사회여건의 미흡으로 지지부진하였으나, 2007년 제41회 정기총회에서 공제사업 시행안을 의결시켰고, 2008년 제42회 정기총회에서 공제사업 준비자금 차입안을 승인한데 이어 동년 국토해양부의 건축사 공제사업 승인(손해배상공제 우선시행), 2009년 3월 17일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및 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발의,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23일 건축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392호) 됨으로써, 전면적인 공제사업 개시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출자금 모집을 개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창립총회 개최, 2011년 1월 사업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 법시행령’,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시행령’개정 등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도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의 희망이 되는 공제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사 공익을 위하여 협회의 발전은 곧 건축사 자신의 발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 하는 조합원이 되어야겠습니다. 기히 시행되고 있는 유관 공제조합을 이용하기보다는 출자금이 보다 저렴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을 활용함으로써 협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예정된 공제조합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에의 가입이 의무사항인 만큼, 자원하여 출자금을 납부하는 회원들이 많아져서 조합의 살림살이 기반이 다져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시 · 도 건축사회의 회장님이 회원들에게 공제조합 참여를 적극 권유하여 주시고, 회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시어 공제조합 가입과 이용률을 높여 공제조합이 탄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제조합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통해 건축사들의 역할수행에 따른 대 국민적 신뢰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안심하고 설계를 의뢰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는 자신의 업무수행에 따른 지급채무를 보증 받음으로써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회원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건축사에게 희망을” ■



손원태 / Son, Won-lae, KIRA
대한건축사협회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학력

- 동아대 · 연세대학원
- 부천시건축사회 회장
- 부천시건축설의위원
- 현 동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